##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9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위성락・이기헌・김병주

이훈기 • 박균택 • 김한규

윤후덕 • 홍기원 • 안태준

박지원 · 황정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의 수집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 (안 제98조).

법률 제 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 중 "敵國을"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로, "敵國의"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敵國에"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로, "前項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98조(간첩)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8條(間諜) ① <u>敵國을</u> 爲하여	제98조(간첩) ① <u>외국 또는 외국</u>
間諜하거나 <u>敵國의</u> 間諜을 幇	인 단체를
助한 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u>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의</u>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 軍事上의 機密을 <u>敵國에</u> 漏	②의국 또는
泄한 者도 <u>前項의</u> 刑과 같다.	<u>외국인 단체에</u>
	제1항의